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한시기구 설치협의 및 운영 부적정

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에 설치된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였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현황 >

| 자치단체명 | 기구명        | 운영기간           | 부서 / 정원  | 비고 |
|-------|------------|----------------|----------|----|
| 충북 충주 | 신성장전략국     | '17.1월~'22.12월 | 2과 / 33명 | 4급 |
| 충북 제천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 '19.1월~'22.12월 | 2과 / 40명 | 4급 |

충청북도 충주시에 설치된 신성장전략국(4급)의 경우 신성장전략과와 바이오산업과가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천시에 설치된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4급)의 경우 관광미식과와 도시재생과가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개발, 도시재생뉴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충주시 신성장전략국은 '17년에 신규 설치 승인되어 지속적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까지 6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기구정원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국에는 2개의 과만 설치되어 있어 규모의 측면에서도 국단위 업무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신성장전략국은 한시기능 외에도 상시기구로서 수행하여 지속성·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상시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신성장전략국에서 수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특정 지역산업 지원 등의 기능은 긴급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능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산업국 등 상시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하고 있다.

제천시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은 '19년에 신규 설치 승인되었으며, 이 또한 하부에 2개의 과만 설치되어 있어 국단위 업무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관광개발 기능과 도시재생 기능은 일부 한시적 업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4급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상시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재편 및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미식과는 문화복지국 하부조직으로, 도시재생과는 안전건설국 하부 조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4급 한시기구 설치 협의 주체로서 충주시, 제천시의 해당 한시기구가 법령상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시·군의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재생 등의 사무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4급 한시기구 설치를 승인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에 부합한 합리적 기구운영 및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 한시기구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협의시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조치할 사항

### 충청북도지사, 충주시장, 제천시장께서는

시·군 한시기구에 대한 실태점검 및 한시기구 적정 협의기준 등을 포함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국장급 기구)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의 '환경관리본부', 충주시의 '환경수자원본부'는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세부 내역 >

| 자치단체명 | 기구명     | 소장직급 | 부서 / 정원   | 비고 |
|-------|---------|------|-----------|----|
| 충북 청주 | 환경관리본부  | 4급   | 6과 / 106명 |    |
| 충북 충주 | 환경수자원본부 | 4급   | 5과 / 155명 |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의 조직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자원관리과,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는 각각 환경정책, 기후정책, 자원정책 기능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책기능을 사업소로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적정하지 않은 기구 운영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관리본부 내 각 부서의 사무실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어, 각각이 별개의 사업소로 운영되어야 할 것을 소장직급 상향 책정을 위해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해당 분야 행정의 효율적 의사결정 및 체계적 관리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도 이와 유사하게 환경·기후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소로, 상·하수도 관리 기능과 정책기능을 결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 소장직급을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및 시·군의 사업소 설치·운영 분석 결과 청주시와 충주시의 4급 사업소장 설치·운영 실태와 이에 관한 충청북도의 승인사항 검토 결과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 사업소장(4급)을 폐지하고, 하부 조직을 5급 사업소로 개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하며, 정책기능은 본청으로 편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지자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 정 안 전 부

## 개선권고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과장급 기구)

기 관 명 진천군, 괴산군

내 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에는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의 통합일자리지원단(5급) 경우 본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책기획 기능을 사업소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소 설치 요건에 맞게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량 및 통솔범위 측면에서는 본청 팀장급(6급)이 관장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직급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괴산군 수도사업소의 경우 본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기구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청 직제로 편입하거나 설치 요건에 맞게 적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사례 >**

| 시·군 | 사업소명<br>(설치일)                       | 정원<br>(현원) | 주요 기능  | 사업소 요건 미흡 사항<br>(관련 규정)   |
|-----|-------------------------------------|------------|--|---|
| 진천  | 통합일자리<br>지원단<br>(5급)<br>(’21.01.01) | 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정책 추진</li> <li>• 재정일자리사업 추진</li> <li>• 취업연계 사업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기능* 등 사업소 성격 불부합(자치법시행령 제77조)</li> <li>* 지역고용정책 수립, 일자리 중장기 로드맵, 일자리 사업 총괄 등</li> <li>• 업무량(정원 8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li> </ul> |
| 괴산  | 수도사업소<br>(5급)<br>(’05.01.07.)       | 13/<br>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 상·하수도 정비</li> <li>•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가 市 본청 내 소재</li> </ul>  |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 괴산군수께서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사업소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고 법령상 사업소 설립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

## 개선권고

제 목 장기간 임시조직(TF)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내 용

임시조직(TF)은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단기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단기간 역할 수행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청주시, 제천시의 경우 임시조직(TF) 설치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해당 임시조직을 해체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임시조직(TF) 형태로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 < 1년 이상 임시조직(TF) 운영 현황 >

| 지자체명 | 임시조직(TF) 명    | 소속                              | TF 구성원                   | TF 설치일 (기간)              | 비고 |
|------|---------------|---------------------------------|--------------------------|--------------------------|----|
| 청주시  | 시유재산찾기TF (6급) | 도로사업본부<br>도로시설과 (5급)            | (2명) 6급 1,<br>7급 1       | '17. 7. 10.<br>(4년 4개월)  |    |
| 제천시  | 도시재생TF (6급)   | 드림팜도시재생<br>추진단(4급)<br>도시재생과(5급) | (3명) 6급 1,<br>7급 1, 8급 1 | '20. 1. .6.<br>(1년 11개월) |    |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께서는

1년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조직(TF)에 대하여는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폐지 또는 직제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기관명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규모의 적정성과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1.6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과 단위의 평균 정원은 2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 등 4개 시·군은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 정·현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

| 지자체명 | 실·국          | 과명               | 정원 | 현원 |
|------|--------------|------------------|----|----|
| 청주   | 청주고인쇄박물관(4급) | 학예연구실(연구관/5급 상당) | 9  | 9  |
| 제천   | 행정지원국(4급)    | 대외협력과(5급)        | 5  | 4  |
| 영동   | -            | 양수발전건설지원단(5급/한시) | 5  | 5  |
| 진천   | -            | 통합일자리지원단(5급)     | 8  | 8  |

##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 영동군수, 진천군수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 정 안 전 부

## 시정요구

제 목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 대한 파견인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내 용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으로 직속기관(§113), 사업소(§114), 출장소(§115), 합의제행정기관(§116), 자문기관(§116의2)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제116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정원은 정원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구의 정원 관리기관은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파견근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통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로의 파견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문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비교 >**

| 구분                 | 관련 법령   | 성격                | 사무국 설치  | 비고 |
|--------------------|---|-------------------|---|----|
| 자문기관<br>(자문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br>동법 시행령 제79조,<br>지자체 기구·정원규정<br>제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br>소속 행정기관 | 불가<br>(파견 불가)                                 |    |
| 합의제행정기관<br>(행정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16조,<br>동법 시행령 제80조,<br>지자체 기구·정원규정<br>제22조 제2항   | (파견개념<br>성립하지 않음) | 가능<br>(지자체 기구·정원<br>조례·규칙에 기구 및<br>정원을 반영해야함) |    |

청주시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구성, 소속 공무원을 파견(총 4명/ 6급 2명, 7급 2명)하고 있다.

**< 지자체 소속 위원회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 사례 >**

| 위원회명<br>(설립일)                       | 근거                                | 사무국 구성   | 청주시 파견현황                                      |
|-------------------------------------|-----------------------------------|--|---|
| 청주시 시내버스<br>준공영제 관리위원회<br>(21.1.1.) | 청주시 시내<br>버스 준공영제<br>운영에 관한<br>조례 | ·조직 : 1위원장 1국 2팀<br>·인력 : 12명(채용 8*, 파견 4**)<br>* 위원장, 사무국장, 직원 6<br>** 6급(팀장) 2명, 7급 2명 | 4명<br>(청주시 6급 2*, 7급 2)<br>*총무조사팀장,<br>정산사업팀장 |

청주시는 파견이 불가능한 조직에 파견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추진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동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볼 경우 법령상 사무국 설치가 불가하며, ‘합의제행정 기관’으로 볼 경우 사무국의 직제를 기구정원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적절한 추진방식 고려 필요

아울러, 충청북도는 결원보충 승인이 불가능한 기관에 청주시 공무원의 직무 파견 및 결원보충을 승인한 바, 동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께서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직무과건 및 결원보충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정안전부

## 개선권고

제 목 출장소 인력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고,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경우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충청북도 북부·남부 출장소 운영 현황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북부출장소</p> <p style="text-align: center;">소장(4급/12명)</p>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관 2명<br/>(제천·단양 5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행정지원과(5급)<br/>5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산업자원과(5급)<br/>3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환경건설과(5급)<br/>3명                 </div> </div>    | <p><b>【북부출장소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일자 : 10. 8. 1.</li> <li>·설치장소 : 제천시 남산로 10</li> <li>·조직·인력 : 3과 12명(소장: 4급)</li> <li>·관할구역 : 제천시, 단양군</li> <li>·주요기능 : 민원처리(광업·산림·환경분야)<br/>및 지역현안 지원</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남부출장소</p> <p style="text-align: center;">소장(4급/12명)</p>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관 3명<br/>(보은·옥천·영동 5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행정지원과(5급)<br/>5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농업경제과(5급)<br/>3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건설관리과(5급)<br/>3명                 </div> </div> | <p><b>【남부출장소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일자 : 12. 1. 1.</li> <li>·설치장소 :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72</li> <li>·조직·인력 : 3과 12명(소장: 4급)</li> <li>·관할구역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li> <li>·주요기능 : 민원처리(농업·산림·건설분야)<br/>및 지역현안 지원</li> </ul>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시·도 결원보충 업무처리 지침(2008년)'에 따르면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식 파견은 금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장소 직제에도 없는 '협력관' 직위를 신설해 출장소 관할 시·군 과장급(5급)을 2013년 9월부터 파견받아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출장소에 시·군 간부급 파견 장기간 운용 사례 >**

| 출장소명  | 지자체명 | 직급   | 직위  | 최초파견   | 담당업무  |
|-------|------|------|-----|--------|---|
| 북부출장소 | 제천시  | 행정5급 | 협력관 | '13.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출장소간 현안업무 협의</li> <li>◦ 지역주민 여론 수렴, 시·군 사무협조</li> <li>◦ 도·시군, 시·군간 갈등 조정 등 가교역할</li> </ul> |
|       | 단양군  | 행정5급 | 협력관 |        |   |
| 남부출장소 | 옥천군  | 행정5급 | 협력관 | '13.9월 |   |
|       | 영동군  | 행정5급 | 협력관 |        |   |
|       | 보은군  | 행정5급 | 협력관 |        |   |

'협력관'은 시·군과 출장소간 업무협의,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소의 설립 목적 및 기능과는 관련이 적고, 출장소 업무의 상당부분이 민원처리 중심이므로 업무량\* 등을 고려할 경우 시·군 과장급의 장기 지속적인 파견은 적정하지 못하다.

\* 출장소 민원처리 건수 : 연평균 300건 정도(월 25건 정도)

충청북도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파견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하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단양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보은군수께서는**

출장소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시·군 과장급의 지속적인 파견을 지양하시고, 해당 시·군과 협의체 구성, 출장소 기능 재정립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행 정 안 전 부

##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고, 동 규정 별표2의3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충청북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제천시, 단양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관련 부서 통폐합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하여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의 경우 소장 정원에 대하여 하부 과장과 같은 일반직 직급을 책정하는 등 계서체계에 맞지 않게 정원을 책정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2) 아울러 영동군의 경우 소장·과장이 될 수 없는 농업연구관을 소장·과장 직위에 정원을 책정하여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직급 재책정 등 개선이 요구된다.

3) 그리고 제천시, 옥천군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 이를 누락하였기에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 붙임)

##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단양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사무 및 과장의 정원이 법령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사례 >

| 명칭<br>(설치일)                   |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                             |       | 개편방향  | 비고   |
|-------------------------------|--------------|-----------------------------|-------|---|--|
|                               | 직위           | 정원                          | 현원    |   |  |
| 제천시<br>농업기술센터<br>(’62. 4. 7)  | 소장           | 행정·기술4·농촌지도관                | 행정4급  |   | ’18.11.23. 본청<br>농업정책과,<br>유통축산과와<br>통합                        |
|                               | 농업정책과장       |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 농업5급  |   |  |
|                               | 유통축산과장       | <b>행정·농업·수의5</b>            | 행정5급  |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br>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  |
|                               | 농촌상생과장       |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 행정5급  |   |  |
|                               | 기술지원과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  |
|                               | 기술보급과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  |
| 옥천군<br>농업기술센터<br>(’62. 4. 1)  | 소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   | 계서체계 위반 →<br>센터장이 일반직 복수직렬 이면<br>하부과장 지도관 단수여야 하며,<br>센터장이 지도관 단수이면<br>하부과장 일반직 복수직렬 가능 | ’19.1.1. 본청<br>친환경농축산<br>과와 통합                                 |
|                               | 친환경<br>농축산과장 | <b>농업5</b>                  | 농업5급  | 농촌지도관 정원 책정 원칙<br>→ 지도관 정원 추가하되,<br>일반직 정원은 계서체계 맞게 조정                                  |  |
|                               | 농촌활력과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일반직 정원은 계서체계 맞게 조정  |  |
|                               | 기술지원과장       |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통합과 무관(양호)  |  |
| 영동군<br>농업기술센터<br>(’57. 8. 2)  | 소장           | 농촌지도관 <b>농업연구관</b>          | 농촌지도관 |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br>부적정 → 연구관 삭제  | 본청<br>농정부서와<br>미통합   |
|                               | 농업지원과장       | 농촌지도관 <b>농업연구관</b>          | 농촌지도관 | ”   |  |
|                               | 시험연구과장       | 농촌지도관 <b>농업연구관</b>          | 농촌지도관 | ”   |  |
| 진천군<br>농업기술센터<br>(’15.11.11)  | 소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계서체계 위반 →<br>센터장이 일반직 복수직렬 이면<br>하부과장 지도관 단수여야 하며,<br>센터장이 지도관 단수이면<br>하부과장 일반직 복수직렬 가능 | ’20.1.1. 본청<br>친환경농정과,<br>축산위생과와<br>통합                         |
|                               | 농업정책과장       | <b>행정·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  |
|                               | 농촌지원과장       | <b>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  |
|                               | 축산유통과장       | <b>농업·수의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  |
|                               | 기술보급과장       |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  |
| 단양군<br>농업기술센터<br>(’57. 5. 1.) | 소장           | <b>행정·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업5급  | 계서체계 위반 →<br>센터장이 일반직 복수직렬 이면<br>하부과장 지도관 단수여야 하며,<br>센터장이 지도관 단수이면<br>하부과장 일반직 복수직렬 가능 | ’21.7.2. 본청<br>농업축산과,<br>농산물마케팅<br>사업소,<br>균형개발과<br>(농업기반)와 통합 |
|                               | 농업축산과장       | <b>행정·농업·복지5</b> ·농촌<br>지도관 | 농촌지도관 |   |  |
|                               | 농촌활력과장       | <b>행정·농업·복지5</b> ·농촌<br>지도관 | 복지5   |   |  |
|                               | 기술지원과장       | <b>행정5·농업5</b>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  |

# 행 정 안 전 부

## 시정요구

제 목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제천시, 영동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산하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농촌지도관을 읍·면·동장 직위 및 본청 부서에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사례 >

| 지자체명 | 직위             | 정원                          | 현원           | 비고 |
|------|----------------|-----------------------------|--------------|----|
| 제천시  | 봉양읍장           | 행정·공업·농업·시설 5급              | <u>농촌지도관</u> |    |
|      | 청풍면장           | 행정·농업·보건 5급, <u>농촌지도관</u>   | 행정5급         |    |
|      | 수산면장           | 행정·농업·의료기술 5급, <u>농촌지도관</u> | 농업5급         |    |
|      | 덕산면장           | 행정·농업·녹지 5급, <u>농촌지도관</u>   | 시설5급         |    |
|      | 한수면장           | 행정·농업·간호 5급, <u>농촌지도관</u>   | 행정5급         |    |
|      | 백운면장           | 행정·농업·녹지 5급, <u>농촌지도관</u>   | 행정5급         |    |
|      | 신백동장           | 행정·농업·보건 5급, <u>농촌지도관</u>   | 행정5급         |    |
|      | 화산동장           | 행정·농업·간호·시설 5급              | <u>농촌지도관</u> |    |
| 영동군  | 농정과<br>농산물유통팀장 | <u>농촌지도사</u>                | <u>농촌지도사</u> |    |
|      | 농정과<br>과수원에팀장  | <u>농촌지도사</u>                | <u>농촌지도사</u> |    |

## 조치할 사항

### 제천시장, 영동군수께서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복무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관 인력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였다.

### <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

| 지자체명 | 부서명   | 직급      | 담당사무    |
|------|-------|---------|---------|
| 충청북도 | 총무과   | 행정·별정5급 | • 비서 업무 |
|      | 의회사무처 | 행정·별정5급 | • 비서 업무 |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렬 정원을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등 법령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 정 안 전 부

## 시정요구

제 목 5급 이상 정·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충청북도 산하 시·군의 5급 이상 직급별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능에 부합하는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재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 지자체명 | 직위         | 정원               | 현원     | 비고 |
|------|------------|------------------|--------|----|
| 청주시  | 중앙동        | 행정·복지·시설 5급      | 방송통신5급 |    |
|      | 내덕제2동      | 행정·복지·시설 5급      | 녹지5급   |    |
|      | 울량사천동      | 행정·복지·시설 5급      | 공업5급   |    |
|      | 산림관리과장     | 농업·녹지 5급         | 행정5급   |    |
|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 행정·농업·수의 5급      | 녹지5급   |    |
| 충주시  | 주덕읍        | 행정·복지·농업·환경 5급   | 시설5급   |    |
|      | 중앙탑면       | 행정·사회·농업·시설 5급   | 보건5급   |    |
|      | 시립도서관장     | 행정·사서 5급         | 환경5급   |    |
|      | 박물관장       | 행정5급·학예연구관       | 간호5급   |    |
| 제천시  | 교동         | 행정·복지·의료기술·시설 5급 | 환경5급   |    |
|      | 영서동        | 행정·복지·농업·방송통신 5급 | 시설5급   |    |
|      | 용두동        | 행정·복지·공업·농업 5급   | 시설5급   |    |
|      | 여성가족과장     | 행정·복지 5급         | 의료기술5급 |    |
|      | 산림공원과장     | 행정·공업·녹지 5급      | 시설5급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5급 | 농업5급   |    |
| 보은군  | 환경위생과장     | 행정·보건·간호·환경 5급   | 시설5급   |    |
| 영동군  | 용화면장       | 행정·농업·보건 5급      | 환경5급   |    |
| 진천군  | 덕산읍        | 행정·농업·복지·간호 5급   | 시설5급   |    |
|      | 이월면        | 행정·농업·시설·보건 5급   | 사회복지5급 |    |
|      | 민원과장       | 행정·시설5급          | 공업5급   |    |
| 괴산군  | 의회사무과장     |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 방송통신5급 |    |
| 단양군  | 수석전문위원     | 행정5급·행정6급        | 방송통신5급 |    |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7년 하반기부터 현장서비스 확충 로드맵에 따라 현장 인력 중심의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해 인력증원분(국가정책수요)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은 국가현안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7년 하반기 ~ '21년간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충청북도 및 시·군에 대한 증원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당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 국가정책 수요인력 미증원 현황 >

| 지자체 | 연도   | 분야    | 증원목표 인력<br>(기준인건비 반영인력) | 미증원 인력 |
|-----|------|-------|-------------------------|--------|
| 괴산군 | 2021 | 지적재조사 | 1                       | 1      |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적정인력 증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는 '23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미증원 인력 1명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자체 개선조치)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기 관 명 옥천군, 음성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을 2018년도~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2017.12.29., 2018.12.20., 2019.10.02.)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추진요령, 매뉴얼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2018.05.04., 2019.04.29., 2020.03.04.)하였으며,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정 취지에 맞게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지침에 따른 충청북도 산하 시·군의 확충인력 중 일부는 임용 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내용 : 붙임)

조치할 사항

옥천군수, 음성군수께서는

기 배정된 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충청북도 산하 시·군 주공'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사례 >

| 자치<br>단체명 | 확충인력        |     |     | 배치당시 담당업무  | 비고 |
|-----------|-------------|-----|-----|--|----|
|           | 정원조례<br>개정일 | 부서명 | 성명  |  |    |
| 옥천군       | 2020. 1. 1. | 청산면 | 전○○ | 회계업무, 통계업무, 청사관리 및 소방, 자율<br>방범대 관리                                    |    |
|           | 2020. 1. 1. | 군서면 | 윤○○ | 주민등록, 제증명, 인감, 정부24, 금강수계,<br>취학아동                                     |    |
|           | 2020. 1. 1. | 군북면 | 김○○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업무   |    |
| 음성군       | 2019.12. 5. | 소이면 | 조○○ | 보건소 소관 업무,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br>행정차량 관리, 대외협력팀 업무(자원봉사<br>및 전산입력 관리, 문서배부  |    |
|           | 2019.12. 5. | 원남면 | 하○○ | 미디어정보과 소관, 문화체육과(체육회) 소관,<br>환경과(자연보호협의회) 소관, 청소위생과<br>소관, 문화누리, 우편물관리 |    |
|           | 2019.12. 5. | 맹동면 | 양○○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소관, 문화체육과,<br>환경과, 청소위생과, 미디어정보과                            |    |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소방 현장부서 배정인력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감축 등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화재조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분야 현장부족인력 등 2만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압대, 구조대 등 현장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하여 2018년 213명, 2019년 208명, 2020년 214명, 2021년 199명을 확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020년에 충청북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를 충주소방서 충주수난구조대 본대와 제천소방서 및 괴산소방서 수난구조지대로 개편하면서, 괴산소방서 수난구조지대에 충분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야간에는 1인이 수난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장인력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수난구조대 정원 및 현원 현황 >**

| 구분           | 정원 | 현원 | 근무형태 | 비고          |
|--------------|----|----|------|-------------|
| 충주소방서 수난구조대  | 13 | 13 | 3교대  |             |
| 제천소방서 청풍수난지대 | 5  | 6  | 3교대  |             |
| 괴산소방서 괴산수난지대 | 4  | 4  | 3교대  | 야간<br>1인 근무 |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소방 현장부서에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 배치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소방 현장부족인력의 충원계획에 따른 정원 배정 등 소방력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안전교육 배정인력의 배치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소방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기관의 소방력 등급에 따라 예방안전부서에 안전교육요원을 배치하여 국민의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대형화재 등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과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매년 소방안전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요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10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1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통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12개 소방서에 안전교육요원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1급·2급 5개 소방서를 제외한 보은소방서 등 7개 소방서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 소방서 안전교육요원 정원 및 현원 현황 >

| 연번 | 소방서   | 소방력 기준 | 정원 | 현원 | 비고             |
|----|-------|--------|----|----|----------------|
|    | 계     | 7      | 0  | 7  |                |
| 1  | 보은소방서 | 1      | 0  | 1  | 예방업무<br>담당자 겸직 |
| 2  | 옥천소방서 | 1      | 0  | 1  |                |
| 3  | 영동소방서 | 1      | 0  | 1  |                |
| 4  | 증평소방서 | 1      | 0  | 1  |                |
| 5  | 진천소방서 | 1      | 0  | 1  |                |
| 6  | 괴산소방서 | 1      | 0  | 1  |                |
| 7  | 단양소방서 | 1      | 0  | 1  |                |

※ 안전교육 정원 배치 소방서 : (1급) 청주동부소방서 (2급) 청주서부, 충주, 제천, 음성소방서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방 예방안전부서에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 배치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조치할 사항

### 충청북도지사께서는

적정 소방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인력 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행 정 안 전 부

## 개선권고

제 목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결원보충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행정안전부는 '08년에 '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통해 결원보충 승인의 원칙과 절차를 지자체에 통보한바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파견의 경우,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기관의 설립 초기에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설립 초기라고 보기 어려운 기관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간 공무원을 파견(인건비 지원 포함)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적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하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파견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무원 파견' 대신 협의체 구성, 관계 공무원 겸직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반사항 : 불임)

### 조치할 사항

#### 충청북도지사께서는

결원보충 승인 업무처리 요건·절차 준수 및 비영리법인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파견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결원보충 승인 부적정 운용 사례 >

| 지자체명 | 기관명<br>(설립일)                           | 최초파견일      | 파견 및<br>결원보충 인원                        | 파견자 주요 역할  |
|------|--|------------|--|--|
| 충청북도 | (사)충북산학<br>융합본부<br>(‘12.6월)            | ’17.7.21.  | 4명<br>(도 5급 1, 6급 1,<br>청주 5급 1, 6급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획실 업무 총괄</li> <li>◦ 본부 조직, 인사, 성과평가 등</li> <li>◦ 사업화지원실 업무 총괄</li> <li>◦ 산학융합R&amp;D지원사업, 산학연발전<br/>사업 총괄 등</li> </ul> |
|      | (재)오송첨단의료<br>산업진흥재단<br>(‘10.12월)       | ’16.1.17.  | 1명<br>(도 5급)                           | ◦ 충청북도 R&D 활성화 계획 수립·<br>시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총괄   |
|      | (재)유네스코<br>국제무예센터(IC<br>M)<br>(‘17.1월) | ’17.1.1.   | 4명<br>(도 5급 1, 6급 1,<br>충주 5급 1, 6급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예센터 기본계획 수립, 인사<br/>계약, 급여, 복무, 이사회 운영 등</li> <li>◦ 유네스코 회원국별 무예콘텐츠<br/>개발 사업 연구 등</li> </ul>                            |
|      | (재)충북문화재단<br>(‘11.11월)                 | ’11.12.16. | 1명<br>(도 6급)                           | ◦ 재단조직·인사·노무·근무평정,<br>계약업무, 도위탁재산 운영·관리,<br>예산 및 회계 총괄 등   |
|      | (재)충북여성재단<br>(‘17.2월)                  | ’17.3.20.  | 2명<br>(도 5급 1, 6급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업무 총괄</li> <li>◦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br/>(인사, 복무, 예산, 지출, 평가 등)</li> </ul>  |
|      | (재)충북창조경제<br>혁신센터<br>(‘15.2월)          | ’15.4.15.  | 1명<br>(도 5급)                           | ◦ 경영전략실 업무 총괄<br>(사업기획, 대외협력, 조직, 인사 등)  |
|      | (재)충북학사<br>(‘16.7월)                    | ’16.7.11.  | 1명<br>(도 5급)                           | ◦ 동서울관 사무 총괄<br>(인사, 복무, 예산, 지출, 평가 등)   |
|      | (재)충주중원<br>문화재단<br>(‘06.9월)            | ’20.7.13.  | 3명<br>(충주 5급 1, 6급 1,<br>7급 1)         | ◦ 예산, 인사 및 관광사업 총괄 등   |
|      | 청주상공회의소<br>(‘53.10월)                   | ’21.7.27.  | 3명<br>(도 5급 1, 6급 1,<br>7급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 업무 총괄</li> <li>◦ 고용안정협의회, 예산, 회계 등<br/>총괄</li> <li>◦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등 총괄</li> </ul>                                      |

# 행정안전부

##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 연번 | 지자체명 | 재배치 달성률(%) |      |      | 비고        |
|----|------|------------|------|------|-----------|
|    |      | '18년       | '19년 | '20년 |           |
| 1  | 충주시  | -          | -    | -    | 2년이상 1%미만 |
| 2  | 보은군  | -          | -    | -    | "         |
| 3  | 옥천군  | -          | -    | -    | "         |
| 4  | 영동군  | -          | -    | -    | "         |
| 5  | 증평군  | -          | -    | -    | "         |
| 6  | 괴산군  | -          | -    | -    | "         |
| 7  | 음성군  | -          | -    | 0.24 | "         |
| 8  | 단양군  | 1.06       | -    | -    | "         |

##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

## 시정요구

제 목 충청북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 자치단체명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         | 위원수 |
|-------|---------------------|------------|------------|---------|-----|
|       |                     | 법령<br>(강행) | 법령<br>(임의) | 조례<br>등 |     |
| 충북도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          |         | 20  |
| 청주시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20  |
|       | 드론자문행정서비스자문위원회      |            |            | ○       | 8   |
|       | 향토음식심의위원회           |            |            | ○       | 12  |
|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          |         | 9   |
|       | 한옥위원회               |            |            | ○       | 13  |
|       |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            |            | ○       | 0   |
|       | 약취대책민관협의회           |            |            | ○       | 11  |
|       | 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      |            |            | ○       | 11  |
| 충주시   | 마을기업심사위원회           |            | ○          |         | 5   |
|       | 경제자문위원회             |            |            | ○       | 18  |
|       | 충주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      |            | ○          |         | 8   |
|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20  |
|       | 향토음식위원회             |            |            | ○       | 14  |
|       | 소비자보호대책실무위원회        |            |            | ○       | 16  |
|       | 목계나루운영위원회           |            |            | ○       | 14  |
|       | 풍류문화관운영위원회          |            |            | ○       | 9   |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            | ○       | 11  |
| 제천시   | 산업단지심의위원회           |            |            | ○       | 11  |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            | ○       | 4   |
|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            |            | ○       | 9   |
|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            |            | ○       | 6   |
| 보은군   | 의로운군민등심사위원회         |            |            | ○       | 8   |

| 자치단체명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         | 위원수 |
|--------------|------------------|--------------|------------|---------|-----|
|              |                  | 법령<br>(강행)   | 법령<br>(임의) | 조례<br>등 |     |
| 보은군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            | ○       | 7   |
|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8   |
|              |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              |            | ○       | 15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15  |
|              | 안전관리자문단          |              | ○          |         | 11  |
| 옥천군          |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            | ○       | 8   |
|              | 공공구매기관협의회        |              |            | ○       | 14  |
|              |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              |            | ○       | 7   |
|              | 안전관리자문단          |              | ○          |         | 11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17  |
|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            | ○       | 9   |
|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            | ○       | 13  |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 ○       | 15  |
|              | 영동군              |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            |         | ○   |
| 향토음식심의위원회    |                  |              |            | ○       | 9   |
| 기초돌봄협의체      |                  |              |            | ○       | 8   |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 ○            |            |         | 9   |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                  |              |            | ○       | 6   |
|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              |            | ○       | 15  |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 14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 16  |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              |            | ○       | 6   |
| 증평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10  |
|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 |              |            | ○       | 13  |
|              |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              |            | ○       | 8   |

| 자치단체명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         | 위원수 |
|-------|---------------------|------------|------------|---------|-----|
|       |                     | 법령<br>(강행) | 법령<br>(임의) | 조례<br>등 |     |
| 증평군   | 맞춤형복지제도운영위원회        |            |            | ○       | 7   |
|       |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            | ○       | 10  |
|       |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위원회       |            |            | ○       | 10  |
|       |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            |            | ○       | 4   |
|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            | ○       | 8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14  |
|       |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 ○          |         | 10  |
|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            | ○          |         | 11  |
|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 ○          |         | 7   |
|       | 증평민속체험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            |            | ○       | 8   |
| 진천군   | 자치분권협의회             |            | ○          |         | 19  |
|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            | ○       | 9   |
|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            | ○       | 9   |
|       | 진천군지편찬위원회           |            |            | ○       | 20  |
|       |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        |            |            | ○       | 10  |
|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    |            |            | ○       | 7   |
| 괴산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            |            | ○       | 9   |
|       | 학교교육지원심의위원회         |            |            | ○       | 6   |
|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            | ○       | 8   |
|       | 양성평등위원회             |            |            | ○       | 11  |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            |            | ○       | 8   |
|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            | ○       | 9   |
|       | 문화예술심의위원회           |            |            | ○       | 7   |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협의회  |            |            | ○       | 20  |

| 자치단체명 | 위원회명                          | 설치근거       |            |         | 위원수 |
|-------|-------------------------------|------------|------------|---------|-----|
|       |                               | 법령<br>(강행) | 법령<br>(임의) | 조례<br>등 |     |
| 괴산군   |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            | ○       | 12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20  |
| 음성군   |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            | ○          |         | 5   |
|       |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            |            | ○       | 13  |
|       |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br>협의회 |            |            | ○       | 10  |
|       | 음성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            |            | ○       | 14  |
|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 ○          |         | 16  |
|       | 음성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            | ○       | 13  |
| 단양군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          |            |         | 8   |
|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          |            |         | 10  |
|       | 노사민정협의회                       |            | ○          |         | 20  |
|       | 투자유치위원회                       |            |            | ○       | 10  |
|       |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 ○       | 10  |
|       | 저수구역위원회                       |            | ○          |         | 20  |
|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            | ○       | 6   |

# 행 정 안 전 부

## 개선권고

제 목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단양군

내 용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에 예산의 범위(기준인건비)에서 정원 외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는 전문임기제 직위를 운영할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조직도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비협직의 직위(시·도 4급 이하, 시·군·구 5급 이하)에 대한 무리한 신설 및 보조기관으로의 전환 운영 등을 경계하고, 성과 및 보수 책정 등 운영현황을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로부터 관리 및 통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단양군은 대외협력관(나급, 5급상당) 직위를 전문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직위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등 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 단양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부합하도록 전문임기제 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 행정안전부

##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충청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청주시·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등이 상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에 충청북도 및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